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국내입양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상담실)과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 2) 녹음기, 카메라 등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

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상근직 전담인력 6명 이상을 위탁업무에 배치할 것

나. 자격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력, 경력 또는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

- 1) 팀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담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3 제3호나목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마)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